

判例 및 審査決定例

地方稅關聯 大法院 判例

1. 2001.4.27. 선고 99다11618판결 [부당이득금]

- [1]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 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에 이른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하고,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

여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이미 설립한 공장의 증축 또는 부수되는 시설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인접토지가 이미 취득한 토지에 부수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토지는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에 이른 경우,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76조 제2항 제1호 참조) / [2]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3]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 13980 판결(공 1999하, 2247) /

[2][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공1996하, 282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원고, 피상고인】 ○○석유화학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9. 선고 98나26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이 공업단지와 유치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업단지 등에 공장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가)목에서 말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하고,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이미 설립한 공장의 증축 또는 부수되는 시설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위 인접토지

가 이미 취득한 토지에 부수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접토지는 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는 1989. 7. 26.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 내에서 폴리카네이트 수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공장을 짓지 못하고 2년을 넘기는 바람에 취득세가 추징된 사실, 원고는 위 공장과는 별개로 카본블랙 공장을 짓기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아 1995. 3. 28.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그 곳에 카본블랙 공장을 신축하고, 인접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카본블랙 공장과의 상호 보완적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축한 다음 1996. 5. 2.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제2토지는 제1토지 면적의 2배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토지는 카본블랙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토지의 취득목적과 다르고, 그 면적 등으로 보아 제2토지가 제1토지에 건축하려던 공장의 증축이나 부수적인 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카본블랙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 할 것이어서 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건축된 공장이 하나의 단일한 공장인지 별개의 독립한 공장인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

고 94다31419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01. 6. 29. 선고 99두 47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 취득세의 추징·종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
- [2] 등록세의 종과세 대상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협동조합의 업무인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운영’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업무인 ‘시장의 유지·관리’의 의미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그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공구판매상가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의 추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운영’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7호에서 시장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시장의 유지·관리’라 함은 “조합 및 조합원(시장 및 입점상인)들을 위하여 단지(시장) 자체 및 공동사업용·사업지원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보존·개량하면서 그 기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내에 속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4] 사업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공구판매상가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 84조의4 제2항(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7호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 / [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4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478 판결(공1997상, 1497)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공1994상, 2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공 1998상, 343) /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공1993하, 1744),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공1998상, 154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0604 판결(공1998하, 1804)

【원고, 피상고인】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한)

【피고, 상고인】 ○○광역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누7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광역시에 산재하고 있는 공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현대적인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협동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공구판매 상가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상에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4 제1항 제9호, 제12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건물 1,227.532㎡ 및 그 부속토지 1,078.37㎡,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원고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원고가 소유하면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수입은 원고가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지출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중과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운영은 사업협동조합의 사업을 규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및 시장개설자의 업무를 규정하는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약

79%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임대하거나 분양·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비워두면서 관리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6,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이용분량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직접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원고의 업무로 규정한 것, 즉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운영하는 것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

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고의 업종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협동조합의 어부 중 하나로 규정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운영’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에서 시장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시장의 유지·관리’라 함은 “조합 및 조합원(시장 및 입점상인)들을 위하여 단지(시장) 자체 및 공동사업용·사업지원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보존·개량하면서 그 기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내에 속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사업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

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사업협동조합으로서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공구 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중 일부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조합자체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의 업무인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운영’ 및 ‘시장의 유지·관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확정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사업목적,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임대 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임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부동산임대업은 위해서 본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이므로, 원고가 이를 영위한 것은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원고가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정·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判例 및 審査決定例

地方稅關聯 行政自治部 審査決定例

1. 2001. 9. 24. 제2001-448호(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장부 영치 등으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자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소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657,043원을 확정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6,798,8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6,249,250원을 2000. 8.30.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1. 4. 당초 부과처분을 소득세할 주민세 549,590

원(가산세 부분)으로 직권 감액경정하고 이를 2001. 2. 1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0.12.10. 다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지함에 따라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착오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부과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감액된 세액으로 독촉장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임을 알았으므로 사실상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2001.2.12.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서울특별 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도 각각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고, 연장

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친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장부가 압수 및 영치됨에 따라 1999년 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2000.7.31.까지 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하고, 그 연장신청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8.30.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당초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액한 세액으로 2000.2.12. 다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은 날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는 본세의 납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미 이행한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이 다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지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본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에 새로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각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겠으며,

둘째,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법상의 신고기한의 만

료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친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장부 압수 및 영치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자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법정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1.9.24. 제2001-482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물류센타를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류센타를 건축할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관리법원이 사업 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소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류센터 및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7.10.15. 경기도 이천시 ○○읍 ○○리 435-8번지와 19필지 토지 59,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2,433,539원)에 구 지방세법(2000. 12.29. 법률 제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633,620원, 농어촌특별세 12,341,400원, 합계 146,975,0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7.1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5년부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수요가 높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물류센터 및 창고를 건립하고자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후 개발행위 신고와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 설계를 거쳐 현재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여 각종 준비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던 중 1997년말 IMF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류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채권단 및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토지매입 경위와 청구인이 법정관리 기업인 점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물류센타 및 창고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4.12.19과 1995.11.4. 및 1996.2.17. 3차례에 걸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997.10.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이전에 이미 물류센타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1997.12.5.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불황과 자금사정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는 물류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물류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불황으

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물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1998.5.19에 물류센타 및 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음 날 관리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단순한 자금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지만, 청구인이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법원이 토지 취득시에는 허가를 하였다가 그 후에 경제불황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